

# 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91호 2019. 7. 18.

선	기관의 장
람	



회							
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 조 례

- 제2384호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제2385호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제2386호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제2387호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3
- 제2388호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29
- 제2389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규 칙

- 제1237호 청양군통계연감발간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 제1238호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5
- 제1239호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8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조례 제2384호

###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5천”을 “1천”으로, “건축물로”를 “모든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현금으로 예치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보관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간이지은저장고와 농산물건조기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중 “부적합”을 “적합하지 아니”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을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한다.

제6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로 하며, 검사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15년으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을 삽입한다.

제35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횡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하며, 단서에 따라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횡수는 3회로 한다

제40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4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지역”을 “제한지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계류하는”을 각각 “매어 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 허가·신고된”을 “허가(신고)된”으로, “면적이하”를 “건축허가(신고) 면적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거 밀집지역 내의 축사를 현 축사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소의 경우 1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 이내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단, 신축시설은 현대화시설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아야 하고,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허가(신고)된 축사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한 번만 증축하는 경우로써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조치를 명할”을 “조치처분을 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조례 제2385호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양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양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을 “군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가축사육의 제한)”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행위제한)”으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가축사육 제한지역
전부가축사육 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li> <li>○「자연공원법」제4조,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li> <li>○「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li> </ul>
일부가축사육 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법」제2조에 따른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li> <li>○「자연공원법」제4조,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li> <li>○「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li> <li>○「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li> <li>○ 주택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으로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 1,500m 이내</li> <li>- 소 등 그 밖의 가축 : 500m 이내</li> </ul> </li> </ul>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비고	<p>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p> <p>2. "직선거리"란 주택대지 경계선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p> <p>3.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4. "주택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주택과 주택 간의 부지경계선 거리 20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의 주거(인가) 지역을 말한다.</p> <p>5.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p> <p>6. 주택 증감으로 인하여 주거 밀집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할 수 있다.</p>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양군수 김돈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조례 제2386호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2년"을 "5년"으로, "사용기간 만료 이전"을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상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점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할 경우 점포가 과다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허가를 이 조례에 따른 최초허가로 본다.

[별표 2]

**시장 사용료 율율표(제11조 관련)**

1. 시장의 상시 사용료

구분	기준	사 용 료
가. 점 포	연간 1제곱미터당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나. 노 점	연간 1제곱미터당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조례 제2387호

###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청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양사랑상품권”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가진 사람에게 제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라 판매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 기관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회수(환전)량, 재고량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출납) 판매대행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 15 -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제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군수는 위조·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의무)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 금고 및 판매 금융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4 -

제10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군 지역에 있는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② 가맹점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따로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그 밖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군수가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자에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 16 -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 변조, 훼손여부, 유효기간, 발행번호 인식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권 취급 가맹점임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업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을 경우
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 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는다.

제14조(상품권의 관리)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 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출납하거나 판매, 회수(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 또는 관련 장부에 즉시 입력(기록)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회수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친공 등)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환전청구 및 대금지급)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한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환전 기한은 3일 이내 환전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명 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 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제20조(예산지원)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품권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규정」을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규정」을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으로 본다.

### 청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 1.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인계·인수 현황

권면금액	발행수량	발행금액	비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2. 청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 청양군, 한국조폐공사, 농협은행(청양군지부)은 위의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1천원권 ×××만장,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 5만원권 xxx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 ○ 인계인수자

- 청 양 군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한 국 조 폐 공 사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농협은행(청양군지부)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청양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      년      월 기준)

권 종	발행(판매)		회수(환전)		재 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합계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사랑상품권 판매 현황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

###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주 소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청양군은 청양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운영명,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청양사랑상품권 운영	청양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청양사랑상품권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판매·광점	청양사랑 상품권 운영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운영명,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청양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청양사랑상품권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 - 호

###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명 :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p>「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양 군 수 귀하</b></p>				
<p>※ 첨부서류</p> <p>1. 지정서 원본 1부.</p> <p>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주 소			
사유				
<p>「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양 군 수 귀하</b></p>				
<p>※ 첨부서류</p> <p>1. 지정서 원본 1부.</p>				

### 청양사랑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

○ 신청인 현황

가맹점 상호		대표자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금입금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가맹점 주소			

○ 청양사랑상품권 교환신청 내역

구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합계
지급매수					
지급금액					

상기와 같이 청양사랑상품권 회수대금을 지급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청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권 종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위와 같이 회수된 청양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담당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조례 제2388호

###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9 -

④ 군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양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수행 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31 -

제3조(채납저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30 -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가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은 군수에게 매각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넘겨주어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넘겨줄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넘겨준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 32 -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받은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 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계좌로 받아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받은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 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빼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 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의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 협의하여야 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조례 제2389호

###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지방공무원”을 “청양군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양군지방공무원”을 “청양군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근무”를 “과건근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휴가의 종류”)를 (“휴가의 종류”)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3조제1항 내지”를 “제25조제1항부터”로, “직위해제기간”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다음표에 따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한다.(다만,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7항 본문 중 “불입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회까지만”을 “4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제23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제23조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군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교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제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의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b>10</b>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청양군통계연감발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규칙 제1237호

**청양군통계연감발간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통계연감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통계연감발간규칙”을 “청양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근거)”를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수록하여”를 “종합 수록하여”로, “군행정의”를 “군 행정의”로,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를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수록내용)”을 “(수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삭제”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감에 수록하는 항목마다”를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으로, “발간년도”를 “발간 연도”로, “읍면별”을 “읍·면별”로, “내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제3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감의 발간부수는 년도”를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감은 발간년도”를 “연보는 발간 연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감”을 “연보”로,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도”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감”을 “연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실장·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행정지원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규칙 제1238호

###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양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2.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제4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면직사유)”를 “(해임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면직시킴”을 “해임시킴”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해당 이장 및 리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각종 이권과 불법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때

제10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2 이상이 연서하여 해임을 요구한 때
6.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청양군 군세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7월 18일

청양군 규칙 제1239호

### 청양군 군세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군세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합산”을 “합”으로 한다.

제16조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청양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비고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b>1. 인격 전문성</b>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b>2. 능력 전문성</b>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b>3. 경매 횟수 등 실적</b>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b>4. 기타 수행능력</b>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b>합 계</b>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청 양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청양군 군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